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861 |
|----------|-----|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12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 가.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2012.1.1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으로 명칭변경)의 산하 시·도 자립지원센터로 운영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2012.1.1자로 폐지하고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하여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 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을 활용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2.10 ~ 2015.9)
- 위탁업무
 - 위탁보호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하 “퇴소아동”)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퇴소아동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퇴소아동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 : 154,835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 제출 배경

-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2012.1.1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으로 명칭변경)의 산하 시·도 자립지원센터로 운영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2012.1.1자로 폐지하고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하여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2) 신규 위탁에 대한 검토

-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경쟁과 효율성을 통한 서비스 전달비용의 절감,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전문성 제고,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속적 대응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는 바,
 -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민간위탁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위탁업무는 위탁보호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하 “퇴소아동”)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비롯하여, 퇴소아동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퇴소아동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임.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09년도 120명, 2010년도 94명, 2011년도 107명 등 매년 100여 명이 퇴소하고 있음.
 - 보통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책에는 주거 지원정책의 경우 비합리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 대학진학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부족하여 퇴소아동의 경우 끝까지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퇴소아동에게는 시설 입소부터 아동의 자립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사회 적응 훈련을 시켜야 하지만, 아동 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자립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서비스 질의 향상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퇴소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도 관리는 물론 퇴소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 선정과 서비스 공급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861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2012.1.1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으로 명칭변경)의 산하 시·도 자립지원센터로 운영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2012.1.1자로 폐지하고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하여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을 활용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개요

- 사무명 :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 운영목적 : 위탁보호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아동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 전담
- 시설규모 : 38m²(사무실 1개, 종사원 5명)
- 소재지 : 서울시 내(가급적 서울 시청에서 근거리)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2.10 ~ 2015.9)
- 위탁업무
 - 위탁보호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하 “퇴소아동”)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퇴소아동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퇴소아동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 : 154,835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아동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실시(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439, 2011.12.7)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신규 민간위탁(공개모집)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직영시 동일조건외 민간인력 대비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가되어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이 상대적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이 예견되며,
-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가 많은 비영리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실시(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439, 2011.12.7)

보건복지부에서 퇴소아동 자립지원 업무 위탁수행 기관을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2012.1.1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으로 명칭변경) 산하에 운영되던 시·도자립지원센터는 2012.1.1자로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서 개정된 아동복지법(2012.8.5 시행) 제40조에 따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2항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기타사항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추진계획(아동청소년담당관-12673호, 2012.6.8)